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-115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여성의 권익증진과 다양한 성별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되는 마포 여성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여성센터 설치·운영의 근거(안 제47조~제48조)

- 안정적인 센터의 운영을 위한 목적 및 역할 등을 명시

나. 센터 운영 위탁 및 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49조~제50조)

-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, 수탁운영자의 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5조(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1. 10. 7. ~ 10. 27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5) 제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1.11.2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의 제목 “보칙”을 “센터 설치 및 운영”으로 한다.

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제51조 및 제52조로 하고,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7조(설치 및 위치) ① 구청장은 지역여성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여성·가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의 소재지는 구에 둔다.

제48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여성·가족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공간 제공
2. 여성·가족 문제 지원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
3. 여성의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동아리·단체 지원
4. 여성 및 구민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
5. 그 밖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

제49조(위탁)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수탁운영자”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운영자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.

제50조(관리·감독 등) ① 수탁운영자는 센터의 반기별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또는 수시 점검으로 수탁운영자를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51조 앞에 “제7장 보칙”을 삽입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수탁운영자”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운영자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.

제50조(관리·감독 등) ① 수탁운영자는 센터의 반기별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또는 수시 점검으로 수탁운영자를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

<신 설>

<신 설>

제47조 · 제48조 (생 략)

치를 하여야 한다.

제7장 보칙

제51조 · 제52조 (현행 제47조 및  
제48조와 같음)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비용추계 요약

가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(1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기본조례」 제6장 센터 설치 및 운영

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기본조례」 제31조(여성시설의 설치·운영)

나. 구청장방침 現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한 여성센터 설치 운영계획(안)

다. 비용추계기간 : 2021. 1. ~ 2025. 12. (60개월)

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 이후 계속)	합계
	세입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시비 보조금	-	-	-	-	-	-
	구비 보조금	43,600	1,706,700	330,890	335,853	340,890	2,757,933
	소계(b)	43,600	1,706,700	330,890	335,853	340,890	2,757,933
□ 총 비용(a-b)		43,600	1,706,700	330,890	335,853	340,890	2,757,933

※ 인건비 상승분(연도별 소요예산의 1.5%) 반영

※ 2022년도 여성센터 설치 리모델링 공사비 1,380,700천원 포함

4. 재원조달 방안 : 구비 전액 지원

5. 덧붙이는 의견 :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 :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김미진 (☎ 3153-8922)